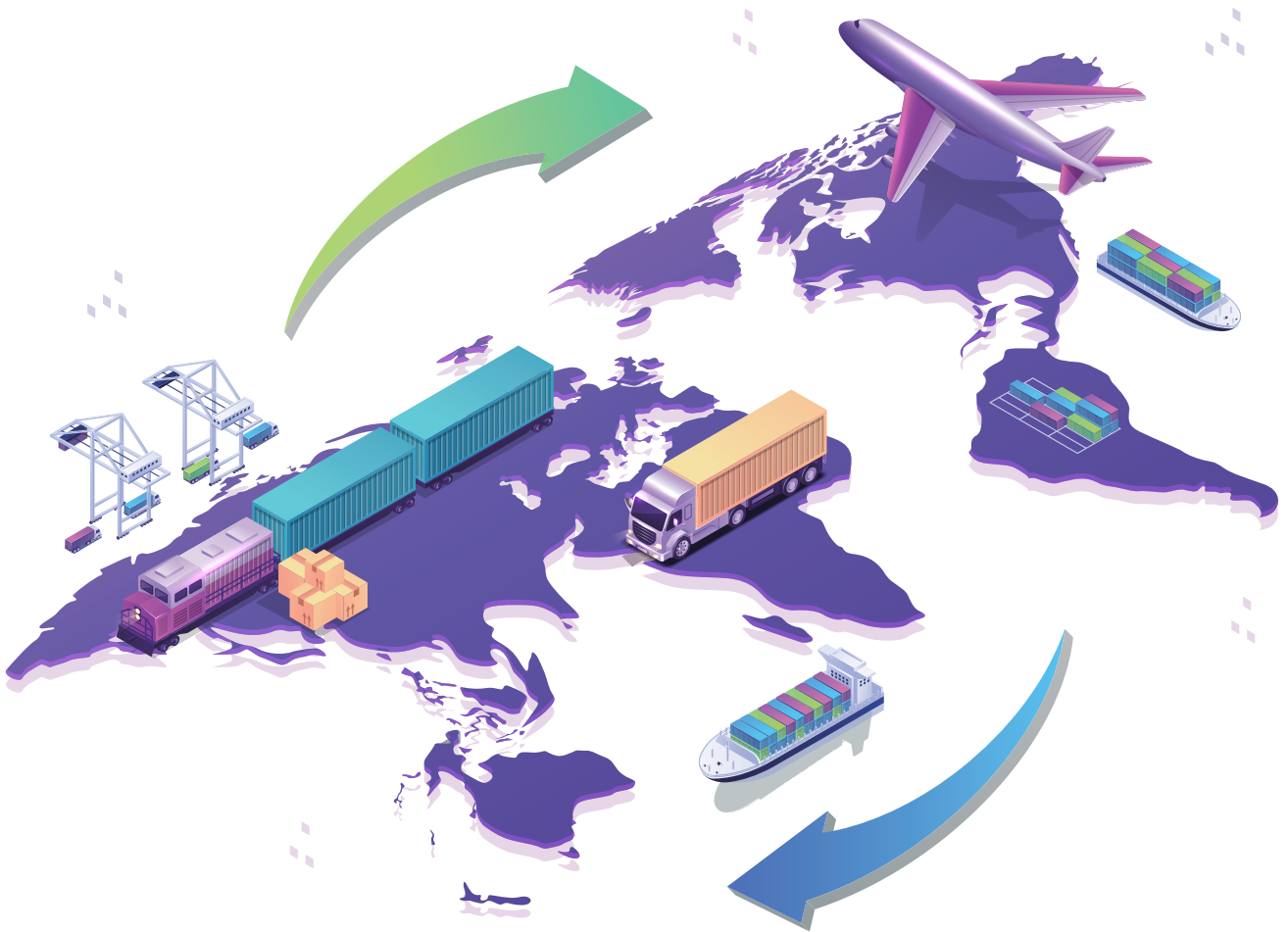


FTA BRIEF

미국 관세정책의 법적 기반과 최근 재편 동향
: 무역법 제301조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중심으로

Vol. 06
August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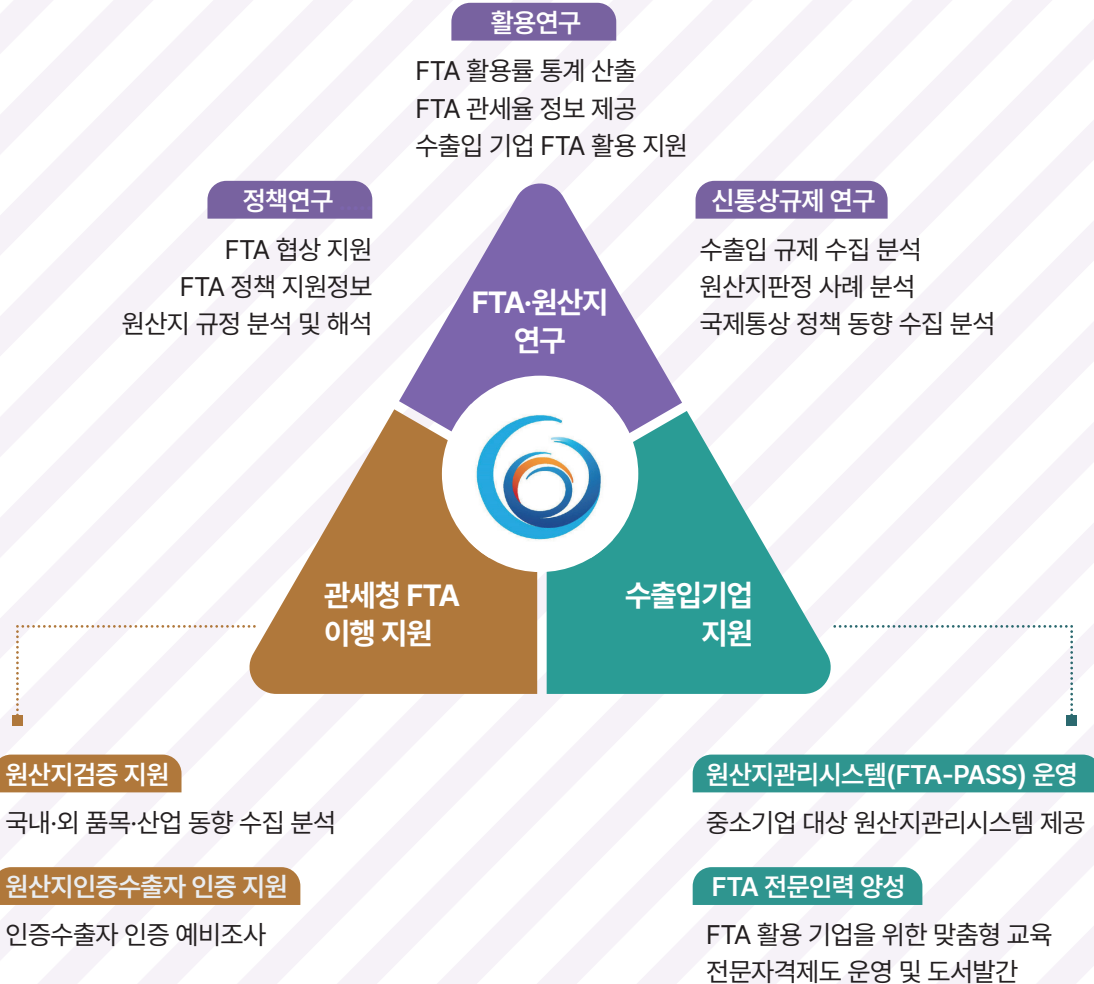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BRIEF」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관련 수집 정보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사업



한국원산지정보원

카카오톡 채널 추가 Ch+ 이벤트



✔ 이벤트 참여 기간 : 2026년 8월 10일 ~ 9월 23일 까지
 ✔ 당첨자 발표 : 2026년 9월 30일

참여방법

STEP 01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
한국원산지정보원을 검색한다.



STEP 02

한국원산지정보원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다.



STEP 03

채팅하기를 클릭하고
이름, 핸드폰 번호를 보낸다

☎ 010-1234-5678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플친맺고 커피 쿠폰 받자!


한국원산지정보원

* 사진 :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카카오 채널 구독자 알림 서비스 제공 실시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기업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 채널 구독자 알림 서비스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 최근 모바일 기반 정보 소비 증가 추세에 맞춰,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발간하는 자료와 주요 사업 안내 등을 구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대민 서비스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 아울러, 신규 채널 개설을 기념하여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많은 기업들이 구독 신청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국 관세정책의 법적 기반과 최근 재편 동향

: 무역법 제301조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중심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 오윤진 활용연구팀장, 구지현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1. 들어가며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의 수출환경과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국의 추가관세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정책 목적과 적용 대상, 발동 요건 및 운영 방식이 서로 다르게 설계·운영되고 있어, 미국의 관세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관세조치의 관세율뿐만 아니라 해당 조치가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6년 미국의 관세정책은 이러한 법적 구조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근거한 관세조치의 지속이 어려워지면서, 미국은 무역법 제122조를 활용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추가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제122조는 법률상 최대 150일까지만 적용할 수 있는 임시적 권한으로, 장기적인 관세정책의 법적 기반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미국은 국가별 추가관세는 무역법 제301조에, 철강·알루미늄 등 전략 품목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각각 근거하여 운영하는 체계로 관세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고에서는 미국 통상법령의 기본 체계를 살펴본 후, 최근 관세정책 재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무역법 제301조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각 법률의 발동 요건과 적용 대상, 운영 방식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최근 미국 관세정책의 구조와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미국 통상법령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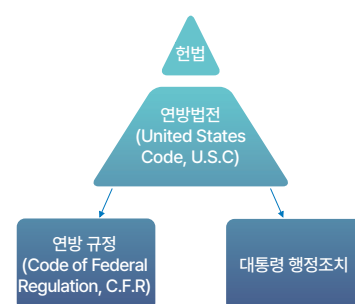
미국의 통상법제는 연방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며,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체계화한 미국 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 이하 U.S.C.)을 기본 법적 근거로 한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 행정부는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이하 C.F.R.)에 수록되는 각종 규정을 제정·운영한다. 특히 무역·관세 분야는 의회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폭넓은 권한을 위임하고, 대통령과 관계 행정기관이 이를 구체화하여 집행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에 따라 실제 관세조치는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고시, 행정기관의 규정 및 유권해석 등을 통해 구체화·시행된다.

(1) 법률

법률은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하는 성문법으로, 의원이 발의한 법안(Bill)이 상·하원의 의결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법(Public Law)으로 제정된다. 이후 이를 주제별로 체계화하여 편찬한 것이 미국 연방법전(U.S.C.)이며, 관세와 무역 관련 주요 법률은 주로 제19편(Title 19)에 수록되어 있다. 무역법(Trade Act)과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역시 미국 연방법전에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의 주요 관세조치는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과 관계 행정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2) 규정 및 규칙

연방정부 부처와 행정기관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행정규정을 제정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규정은 일반적으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최종 규정은 연방규정집(C.F.R.)에 수록된다. 관세 부과 절차, 원산지 규정, 수입통관 등 법률의 세부적인 집행기준도 이러한 규정을 통해 마련된다.



(3) 대통령 입법 및 행정 조치

미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통상정책과 관세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특히 무역·관세 분야에서는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근거로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을 통해 관세율, 적용 대상, 시행 시기 등을 최종 확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 대통령 메모(Presidential Memorandum)를 통해 통상정책의 추진 방향이나 행정부의 집행 방침을 제시하기도 한다.

>> [표 1] 미국 대통령의 주요 행정조치

유형	주요 내용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행정부의 운영과 정책 집행 방향을 제시하거나 위원회 설치 등에 활용되는 대통령의 행정조치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며 일련번호가 부여
대통령 포고령 (Proclamation)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에 따라 관세율 변경, 수입제한 조치, 적용 대상 및 시행 시기 등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행정조치 -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122조 등의 관세조치는 주로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시행
대통령 메모 (Presidential Memorandum)	행정부 내부에 정책 방향이나 집행지침을 제시하는 행정조치로, 행정명령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며 사안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 집행의 근거로 활용

미국의 관세정책은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이 법률상 권한에 따라 관세조치를 결정하며, 관계 행정기관이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다만 무역법 제301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가관세 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대통령 포고령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무역법 제122조 및 무역확장법 제232조와는 집행 절차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행정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최근 미국 관세정책의 핵심 법적 기반인 무역법 제301조와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된다.

3. 미국 관세정책 재편의 법적 기반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안보 확보,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조치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일한 관세조치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에 따라 적용 대상, 부과 요건 및 절차가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요 관세조치의 법적 근거와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현재 행정부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는 대표적 조항인 무역법 제301조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국가별·품목별 관세의 법적 기반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최근 미국 관세정책 재편의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한다.

(1) 국가별 추가관세의 법적 기반: 무역법 제301조

① 제도의 목적

1974년 무역법 제301조(19 U.S.C. §2411)는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미국의 상업을 제한할 때, 미국의 통상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통상법 수단이다. 동 조항은 지식재산권 침해, 노동권 부인, 시장 접근 제한, 정부 보조금 등 광범위한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여 무역대표부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서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무역협정상 양허의 철회·정지, 서비스 부문 제한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② 발동 절차

무역법 제301조는 무역법 제122조·무역확장법 제232조와 달리 대통령이 아닌 무역대표부가 조사·결정의 주체가 되며, 연방관보 고시(Federal Register Notice) 의무가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뚜렷이 구별된다. 다만 무역대표부의 결정과 시행은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specific direction of the President)”에 구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형식상 발동 주체는 무역대표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역법 제122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다.

>> [표 2] 1974년 무역법 제301조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법적 근거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19 U.S.C. §2411)
조치 시행	· 의무적 : 미국의 협정상 권리가 침해되거나 외국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Unjustifiable)' 경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대표부가 반드시 시행 · 재량적 : 외국의 관행이 '불합리(Unreasonable)'하거나 차별적일 때,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시 조치
조사 대상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노동권 부인, 시장 접근 제한, 정부 보조금 등 광범위한 불공정 행위
조치 규모	미국이 입은 경제적 피해액과 동등한 가치 내에서 보복 수준 결정
조치 수단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무역협정상 혜택 철회, 서비스 부문 영업 제한 등
적용 기간	기본 4년(19 U.S.C. §2417(c)) * 단, 종료 전 국내 이해관계자의 연장 요청이 있고 무역대표부가 타당성을 인정해 연장 결정을 내리면 지속 가능

③ 2026년 강제노동 관세 조치

미국은 무역법 제122조 시행 직후인 2026년 3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별도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 중 강제노동 조사는 제122조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국가별 추가관세로 확정·시행되었으나, 과잉생산 조사는 2026년 7월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 [표 3] 1974년 무역법 제301조 연혁

1974년	외국의 비관세 장벽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법 내 신설
1988년	• 종합무역경쟁력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으로 개정 • 조사 권한을 대통령에서 무역대표부로 이전 • 'Super 301(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통한 포괄적 부당무역관행 조사)'·'Special 301(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실태 조사)' 조항 신설
1995년~	WTO 출범 이후 다자간 분쟁 해결 절차를 우선시하며 한동안 사용 자제
2018~20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조사를 개시,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List 1~4) 부과
2026년	• 과잉생산-강제노동 등 새로운 명분으로 제301조 조사 범위 대폭 확대 • 한국 포함 60개국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 발표(2026.7.23.) 및 한국산에 대해 최대 12.5%의 추가관세 부과(2026.7.24.~)

이번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치는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하며 세율 적용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 [표 4] 경제권별 무역법 제301조 강제 노동 관세 적용 방식 및 세율

세율 단계	적용 방식	산식	경제권
10%	정액 가산	MFN + 10%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스리랑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 등 총 17개 경제권
	상한	MFN과 10% 중 높은 세율 적용 · MFN<10% : MFN+추가관세=10% · MFN≥10%: MFN 유지	EU, 대만
12.5%	정액 가산	MFN + 12.5%	중국, 베트남, 브라질, 호주 등 총 38개 경제권
	상한	MFN과 12.5% 중 높은 세율 적용 · MFN<12.5% : MFN+추가관세=12.5% · MFN≥12.5%: MFN 유지	한국, 일본, 스위스

④ 기존 무역법 제301조와의 차이

2018~2020년 대중국 조치 등 과거의 제301조 적용은 특정 품목 리스트(List 1~4)를 지정하여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2026년 강제노동 관련 조치는 품목이 아닌 '국가 자체'를 1차 기준으로 삼는다. 동 조치는 미국 수입의 99.4%를 포괄하는 상위 60개국을 대상으로 각 대상국의 거의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품목만 예외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실상의 보편관세로 기능하고 있다.

≫ [표 5] 1974년 무역법 제301조 주요 적용 사례

대상국	발동 시기	추가 관세율	주요 대상 품목
중국	2018년 7월	25%	List 1 : 항공우주, 기계류, 전자부품(818개 품목)
중국	2018년 8월	25%	List 2 : 화학품, 오토바이, 철도 장비(279개 품목)
중국	2019년 5월	25%	List 3 : 전자제품, 식품, 목재 등(5,733개 품목)
중국	2020년 2월	7.5%	List 4A : 의류, 신발, 소비재 등(3,243개 품목)
중국	발동 유예 중	추후 결정	List 4B : 스마트폰, 노트북 등(약 300개 품목)
16개 경제권 조사 (한국, 중국, EU, 일본 등)	미정	미정	제조업 분야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 관련 조사

(2) 품목별 추가관세의 법적 기반 : 무역확장법 제232조

① 제도의 목적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19 U.S.C. §1862)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수입 할당 또는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다. 전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보편관세와 달리, 상무부의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관세율과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② 조사 절차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상무부 장관의 조사와 국가안보 영향에 대한 대통령 보고를 절차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바탕으로 조치 여부를 "결정(determine)"하고 이를 "시행(implement)"하는데, 조문 자체는 그 시행의 법적 형식을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시행된 조치는 대통령 포고령의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 [표 6]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법적 근거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19 U.S.C. §1862)
조사 주체	상무부 장관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
판단 기준	국내 생산능력, 인적 자원, 원자재 가용성 그리고 외국의 경쟁이 국내 산업의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고려
조사 기간	조사 개시일로부터 최대 270일 이내 대통령에게 보고서 제출
대통령 결정	보고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상무부 의견 동의 여부 및 조치 내용 결정(결정 후 15일 이내 시행)
조치 수단	관세 부과, 수입 할당, 수입 금지 또는 수출입 제한 협정 체결 등
의회 보고	대통령은 조치 결정 후 30일 이내에 의회로 서면 보고 필요

③ 최근 확대 동향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적용 대상 품목과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조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철강·알루미늄에서 구리, 자동차·자동차부품, 목재, 의약품, 반도체 등 전략산업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무역 상대국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동일한 품목이라도 국가별로 서로 다른 추가관세율과 적용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과세 방식 역시 변화하였다. 2026년 4월에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과세 기준을 함량 기준에서 제품 전체 과세가격 기준으로 전환하였고, 7월에는 미국 내 일차 알루미늄 제련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232조 관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활용하여 적용 대상 품목과 과세 방식, 예외 및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면서 국가안보와 공급망 정책을 뒷받침하는 품목별 관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표 7]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연혁

1962년	냉전 상황에서 전략 물자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내에 신설
1970~80년대	주로 석유 수입 제한을 위해 활용 (예시 :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 등의 근거로 활용)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현대 통상 분쟁의 핵심으로 부상
2025년	철강·알루미늄·구리 외에도 자동차·자동차 부품, 중·대형 차량, 목재 등 국가안보 및 공급망 관련 품목으로 수입규제 대상 확대
2026년	- 반도체, 의약품 등 전략산업 품목으로 적용범위 확대 -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함량 기준 → 제품 전체 과세가격 기준으로 전환(2026.4.6.) - 미국 내 일차 알루미늄 산·증설 투자 계획 승인 기업 대상 제232조 관세 50% 감면 인센티브제 도입(2026.7.20.~)

④ 품목 중심 운영 구조

국가를 1차 기준으로 삼는 무역법 제301조와 달리,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품목의 국가안보 관련성을 1차 기준으로 삼는다. 원산지는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세율을 조정하는 2차 기준으로 작동한다. 이에 따라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에 따라 50%(철강·알루미늄·구리 본품), 25%(일부 파생제품, 중대형 차량), 15%(자동차 부품, 산업기계·전력망 장비 등), 10%(연질목재, 버스), 면제(특정 의약품 등)로 차등화된 세율 구조가 적용되고 있다.

➤ [표 8] 한국산 물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세율 현황

구분	적용 세율 및 대상
50%	철강·알루미늄·구리 본품 및 고비용 파생제품(Annex I-A)
25%	철강·알루미늄·구리 일부 파생제품(Annex I-B) / 중대형 차량·부품 / 특정 첨단 반도체 및 파생제품
15%	한국산 자동차 부품 / 산업기계·전력망 장비 및 농업 장비(Annex III, ~2027.12.31.) / 건설장비·이동식 산업기계(Annex I-C, ~2027.12.31.) / 특허 의약품 및 관련 성분
10%	연재(softwood) 원목·제재목 / 버스
면제	Annex II 해당 품목 / 제네릭 의약품·바이오시밀러 등 특정 의약품
인센티브	미국 내 일차 알루미늄 시설 투자 승인 기업 대상 관세 50% 감면 인센티브 신설 (2026.7.20.~)

세율 구조는 기본세율(또는 협정세율)에 제232조 품목별 추가 세율을 더하는 방식이며,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사용한 제품에는 전체가치 기준 200% 관세가 별도로 계속 적용된다.

(3) 미국 관세정책 재편의 특징과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역법 제301조와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발동 주체와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무역법 제301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와 조치를 주도하는 반면,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상무부의 국가안보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조치를 결정한다. 그러나 두 조항 모두 의회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부여한 권한을 근거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정책 판단이 관세조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재편은 이러한 행정부의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입법을 통해 제도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통상법령에 위임된 권한을 활용하여 정책 목적에 맞는 관세조치를 신속하게 도입·조정하는 방식이다.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련 조치가 약 4개월 만에 조사부터 최종 관세 확정까지 이루어진 사례와, 무역확장법 제232조가 적용 대상 품목과 과세 방식, 투자 인센티브 등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또한 최근 미국의 관세체계는 국가별 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병행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국가별 추가관세는 무역법 제301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강제노동 규제 미비국 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반면 품목별 추가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전략 품목에 적용되며, 품목별 특성과 국가별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세율과 적용 방식이 차등 운영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미국 관세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행정부의 정책 판단에 따라 조사 대상과 적용 범위, 세율 및 예외 규정이 비교적 신속하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수출기업은 단순 세율 인상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개별 조치의 법적 근거와 발동 절차, 예외·감면 조건(현지 투자 인센티브 등) 확인을 포함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4. 마무리하며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은 단일한 보편관세 체제에서 벗어나 정책 목적에 따라 국가별·품목별로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2026년 초에는 무역법 제122조가 한시적인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법정 적용기간이 만료되면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국가별 추가관세는 무역법 제301조, 국가안보와 공급망 안정이 요구되는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계가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미국은 관세를 단순한 수입규제 수단이 아니라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재편, 미국 내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운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품목이라도 국가별 협의 결과나 정책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관세율과 적용 방식을 운영하는 등 기존 통상법령에 부여된 권한을 바탕으로 관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에도 새로운 입법보다는 기존 통상법령에 근거한 행정부의 권한 행사가 미국 통상정책의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수출기업은 미국의 추가관세를 단순한 세율 인상으로 이해하기보다, 개별 조치의 법적 근거와 정책 목적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사 수출품목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산지 관리와 공급망 운영, 관세 감면 요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국 미국의 관세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세율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치가 시행되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 운영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글이 미국 주요 통상법령의 역할과 최근 관세정책의 재편 방향을 이해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